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CHINA NEWSLETTER

June, 2026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칼럼 ■

01. 중국에서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새 보호규정 시행에 따른 실무 주의 사항
02. <제 3 편>침해 구제의 4 대 경로와 전략적 대응-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및 침해 구제 가이드

■ 외부 기고 ■

01. K-패션의 중국 진출-상표는 '먼저, 그리고 넓게' 등록해야
02. “내 빛도 아닌데 20 년째 귀국 못 합니다” ...중국에 발 묶인 한국인들(손덕중 변호사)

■ 최신 법령/판례 ■

01. 국무원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2026 년 7 월 1 일 시행
02.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사건처리 지침(공개 의견수렴안) 초안」 (专利纠纷行政裁决和调解办案指南 (公开征求意见稿))
03. 상하이증권거래소 「발행상장심사규칙 적용지침 제 10 호 — 인공지능 대형모델 기업의 커황반 제 5 호 상장기준 적용」 (发行上市审核规则适用指引第 10 号——人工智能大模型企业适用科创板第五套上市标准)

[참고] 영업비밀 해외분쟁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해외기업과의 영업비밀 분쟁(또는 그 위험)을 겪고 계신 기업을 위해, 참고하실 만한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의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올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해외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분쟁을 겪는 경우, 과제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 등 분쟁대응 비용의 일부(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지사·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유출도 국내 모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평은 본 사업의 수행 전문가 POOL에 등록되어 있으며, 한·중 cross-border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에 관하여 본사와 상해지사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KOIPA 특허분쟁 대응전략 <https://www.koipa.re.kr> · 신청 포털(IP-NAVI) <https://www.ip-navi.or.kr> · 문의 1600-8145(ARS 3번)

■ 법률 칼럼 ■

01. 중국에서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새 보호규정 시행에 따른 실무 주의사항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초령노동자 기본권익보장 잠행규정(超齡劳动者基本权益保障暂行规定)>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중국에서 고령 인력을 고용 중이거나 향후 활용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내부 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 5개 부처 공동 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 중국 최초의 초령(超齡) 근로자 전용 보호 법규
- ▶ 정년 초과 근로자 고용 시 서면 고용협약서 체결 의무 신설
- ▶ 최저임금 이상 급여·가산수당·휴일 규정 등 근로조건 기준 명확화
-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공상(工傷) 보장 체계 정비
- ▶ 양로·의료보험 계속 가입 가능 여부와 부담 방식 명시
- ▶ 분쟁 발생 시 노동중재 또는 법원 소송 경로를 법규로 확정
- ▶ 위반 시 노동계약법 제 85조·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른 행정처벌 적용

1. 왜 지금, 이 규정인가 — 제정 배경

2024년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점진적 법정 정년 연장 실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남성 60세·여성 간부 55세·여성 근로자 50세라는 기존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급여, 휴식휴가, 산업안전보건, 산재 보장 등 기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현장의 분쟁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기존 중국 노동법 체계에서는 정년 초과 근로자가 '노동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최저임금 기준을 무시하고, 근로자는 분쟁 발생 시 노동중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잠행규정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중국 최초의 전문 규정입니다.

2. 적용 대상 —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가

잠행규정 제2조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합니다. '초령노동자(超齡劳动者)'란 법정 정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취업 중인 자를 말하며, 사업주의 노무 관리 하에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모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한 뒤 재고용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법인·지사·상주대표기구를 막론하고 중국 내에서 초령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탄력적 정년 연장(弹性延迟退休)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노동계약법>,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등 기존 법규가 적용되어 이 규정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 포인트

현재 중국 법인에 촉탁·계약직·파견 형태로 활용 중인 고령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법정 정년을 이미 초과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기준: 남성 60 세, 여성 간부 55 세, 여성 근로자 50 세 (단계적 연장 중)

3. 사업주의 핵심 의무 — 조문별 정리

잠행규정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총 24 개 조문에 걸쳐 규정합니다. 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사항	구체적 내용
제 6 조	서면 고용협약서 체결 의무	협약 기간, 업무 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보수, 사회보험, 노동보호, 직업위해 방호 등을 명시한 서면 문서 필수 체결
제 9 조	근무시간·초과근무 제한	국무원 근무시간 규정 및 법정 공휴일 규정 준수.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금지. 불가피한 경우 노동법 제 41·42·44 조 규정 적용
제 11 조	최저임금 보장	정상 노무 제공 시 현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제 12 조	임금 지급 방식	통화 방식으로 매월 1 회 이상, 지정 기일에 전액 지급. 현물·유가증권 지급 금지, 공제·지연 지급 금지
제 13 조	적합한 직무·강도 배치	신체 상태를 고려한 적합한 직무 배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 또는 위험 작업 금지
제 14 조	안전·직업보건 교육	산업안전 및 직업보건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기준 준수. 사고 및 직업병 예방
제 15 조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근로자 개인 부담)

	의무화	없음). 공상 인정·노동능력감정 후 보장 급여 적용
제 16 조	양로보험 계속 가입	기수급자는 수급 자격 유지. 미수급자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 납부 가능. 사업주와 합의 시 사업주도 납부 가능
제 17 조	의료보험 계속 가입	양로보험과 동일 구조. 기수급자는 자격 유지, 미수급자는 계속 납부 가능

△ 주의 — 서면 고용협약서

기존에는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해 구두 합의나 간단한 위임장으로 고용 관계를 처리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제 6 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고용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보험 처리 — 한국 기업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이번 잠행규정에서 가장 실무적 의미가 큰 조항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제 15 조)입니다. 기존에는 정년 초과 근로자를 '노동관계'가 아닌 '노무관계'로 처리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양로보험(제 16 조)과 의료보험(제 17 조)은 구조가 유사합니다.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근로자는 기존 수급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직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합의 시 사업주도 납부해줄 수 있습니다. 단,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므로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분쟁 처리 및 위반 제재 — 실제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잠행규정은 분쟁 처리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급여·휴식휴가·산업안전보건·산재보장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따라 노동중재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 19 조). 그 외 사항의 분쟁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제 20 조)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초과근무 절차 위반·최저임금 미준수·임금 지급 방식 위반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은 <노동계약법> 제 85 조 제 1~3 항 및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합니다.

위반 유형	관련 조문	예상 제재
임금 지연·미지급	제 12 조	기한 내 지급 명령, 미이행 시 50~100% 가산금 부가
최저임금 미달	제 11 조	차액 지급 명령 + 과태료
불법 초과근무	제 9 조	시정 명령, 개선 불이행 시 행정처벌
산재보험 미가입	제 15 조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직접 보상 책임
안전교육 미실시	제 14 조	안전생산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6. 탄력적 정년 연장과의 구별 — 혼동하기 쉬운 부분

잠행규정 제 23 조는 중요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탄력적 정년 연장(弹性延迟退休)'을 선택한 근로자는 연장 기간 동안 여전히 노동계약법·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등 기존 노동법 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잠행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력적 정년 연장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과 사업주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잠행규정이 적용되는 '초령노동자'는 법정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되,

법적으로는 이미 퇴직자 지위인 경우입니다. 두 경우를 혼동하면 적용 법규 자체가 달라지므로, 개별 근로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구분	탄력적 정년 연장	초령노동자 (잠행규정 적용)
신분	현역 근로자 (정년 전)	정년 초과 재취업자
적용 법규	노동계약법 등 기존 체계	잠행규정 (2026.7.1 ~)
노동계약	기존 노동계약 유지	별도 서면 고용협약서 필요
사회보험	5 대 보험 전부 적용	산재보험 의무, 나머지 협의

7. 한국 기업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 내부 점검을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법정 정년 초과자 전수 조사

남성 60 세·여성 간부 55 세·여성 근로자 50 세 초과 여부 확인. 탄력적 정년 연장 신청자와 구분

□ 해당 직원 전원에 대해 서면 고용협약서 체결 또는 갱신

제 6 조 필수 기재 사항(협의 기간, 업무 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휴식, 보수, 사회 보험, 직업위해 방호 등) 포함 여부 확인

□ 산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 및 미가입자 즉시 가입 처리

개인 부담 없이 사업주 전액 부담. 기존 거래 중인 보험사·현지 세무 담당자와 협의

□ 급여 지급 방식·주기 점검 (통화 지급, 월 1 회 이상 지정일 지급)

현물·포인트·유가증권 형태 지급 전면 금지. 지연 지급 관행 즉시 정비

□ 초과근무 운영 방침 정비

원칙적 초과근무 금지. 불가피 시 노동법 절차(서면 동의·가산수당) 준수

□ 직무 적합성 재검토 및 안전보건 교육 이수 확인

위험 작업·심신에 해로운 업무 배치 금지. 교육 이수 기록 관리

□ 양로·의료보험 계속 납부 의향 확인 및 협의서 반영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협의 결과를 고용협의서에 명기해야 이후 분쟁 방지 가능

마치며 — 선제적 컴플라이언스가 경쟁력

이번 잠행규정은 단순한 새 규정의 등장입니다. 중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고령 노동력을 정식 법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장기적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악의적 임금 체불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으며, 시행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인 집행 사례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주치는 노동 리스크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미루다가' 발생합니다. 이번 규정은 시행일이 명확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경로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부 점검과 협의서 정비를 완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리스크 격차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잠행규정은 '잠행(暫行)', 즉 한시적 시범 시행 규정입니다. 향후 운용 실태를 반영해 정식 규정으로 격상되거나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 지평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인사 노무 관련 업무 사례]

- SK 그룹 중국법인을 위한 인사노무 자문(인사분쟁 해결)
- D 은행을 위한 인사노무 자문
- H 그룹 중국법인을 위한 인사노무 자문(취업규칙 제정)
- 특수설비 제조회사인 H 사의 중국 자회사 공장 이전과 관장하여 행정인허가, 세무리스크, 인력 구조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H 사 산하 중국 자회사의 대량 감원에 대한 자문 제공
- 중국 자회사의 파업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에 대한 자문 제공

02. <제 3 편>침해 구제의 4 대 경로와 전략적 대응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및 침해 구제 가이드

— 분쟁이 시작되면, 속도가 곧 승패다 —

들어가며

제 1 편과 제 2 편에서 라이선스 유형 선택, 대상 권리의 중국 내 정비, 계약서 설계, 개량기술 귀속 조항 등 **사전 설계** 단계의 핵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을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침해는 발생합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침해 발생 시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4 대 구제 경로의 실무적 운용 방안**을 정리하고,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시 4 대 구제 경로

중국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행정단속, 형사고소, 세관 보호**의 네 가지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행정단속을 병행하는 이원적(双轨制) 운영 체계가 중국 IP 실무의 특징입니다. 각 경로는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므로, 침해의 규모와 양태에 따라 복수 경로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로	주요 조치	특징 및 전략적 활용 포인트
민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증거보전 신청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절차가 다소 장기간 소요되나,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통한 권리 회복에 가장 효과적.

경로	주요 조치	특징 및 전략적 활용 포인트
행정단속	침해행위 중지 명령, 불법 이익 몰수, 행정 과태료 부과	조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자에 대한 직접적 손해배상 명령 권한은 없음.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管局)에 고발하여 진행.
형사고소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	상표 위조의 경우 불법경영액 5 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3 만 위안 이상인 경우 공안(公安) 수사가 개시됨(기준 수치는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죄종 및 최근 사법해석에 따라 상이). 반복적·조직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세관 보호	수출입 물품 압류·조사·폐기	라이선서가 사전에 해관총서에 지식재산권을 등록(备案)해 두면 세관의 직권(Ex Officio) 단속이 가능. 비용 대비 방어 효과가 가장 높음.

실무 권고

- **이원적 대응 전략:** 행정단속으로 침해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고,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병행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침해 현장에 공증원(公证员)을 동행시켜 구매·촬영 과정을 공증서로 남기는 것이 중국 소송의 표준 관행입니다.
 - 온라인 침해의 경우 전자증거 보존 플랫폼을 활용해 웹페이지 내용과 접속 시점을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 **세관 备案의 선제적 완료:** 침해 상품이 유통되기 전 수출입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춘 기업이라면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2. 결론 — 사전 설계부터 사후 대응까지

중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 이상 사후 대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입 단계에서의 권리 확보 → 계약 단계에서의 정교한 조항 설계 → 운영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3 단계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시리즈의 결론으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게 다음 7 가지 사항을 권고드립니다.

1. 권리 유형별 중국 내 보호체계 정비 — 상표·특허는 **중국 내 직접 등록**, 저작권은 **자발등록 병행**, 영업비밀은 **계약적 보호장치와 내부 보안체계** 구축
2. 계약 체결 전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3.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유형의 선택(독점·배타·통상)
4. **CNIPA 备案을 통한 제 3 자 대항력 확보** (특히 라이선시의 지위 보호)
5. 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신중한 설계 — 상호주의와 합리적 대가를 축으로
6. 한·중 조세조약을 반영한 로열티 송금 구조의 사전 설계
7. 세관 备案 및 행정·민사 병행 대응 체계의 사전 구축

시장 진입 단계부터 이러한 설계를 시스템화하는 기업만이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평 상해대표처는 중국 현지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진입 단계의 IP 포트폴리오 구축부터 라이선스 협상·계약 체결, 침해 발생 시 민·행·형·세관 전방위 대응까지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 상해대표처 관련 업무 사례

- 반도체 설비 제조 기업 F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 바이오 기업 B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 러시아 대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 전략 자문
- 웹툰 작가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과의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자문

■ 외부 기고 ■

01. K-패션의 중국 진출 상표는 '먼저, 그리고 넓게' 등록해야

* 본고는 한국무역협회(KITA)에 기고한 글로, KITA LEGAL REPORT 2026 년 6 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

중국 시장을 두드리는 한국 패션 브랜드가 다시 늘고 있다. 샤오홍슈(小红书)에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시태그가 수십만 건씩 쌓이고, 도우인(抖音) 라이브 커머스에는 K-패션 카테고리가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의 이면에서, 진출 단계를 밟기도 전에 브랜드 이름을 빼앗기는 사례는 여전히 흔하다.

1. 한국과 같은 선출원주의, 그러나 '순도'가 다르다.

문제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중국이 한국과 같은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국가라는 점이다. 흔히 '한국은 선사용주의, 중국은 선출원주의'로 대비되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한국 상표법 제 35 조 역시 동일·유사 상표가 경합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인정한다. 차이는 '얼마나 순수한 선출원주의를 관철하는가'에 있다. 한국은 선사용권(상표법 제 99 조), 모방상표 거절 조항(제 34 조 제 1 항 제 13 호), 부정경쟁방지법상 미등록 주지·저명 표지 보호 등 사용주의적 보완장치를 두텁게 두지만, 중국은 그 보완장치가 훨씬 좁다. 한국에서 10 년을 사용해 온 브랜드라도 중국에서는 어제 처음 출원한 자가 권리자가 된다.

이 구조 때문에 중국에는 '직업적 선점꾼(职业抢注人)'이 두텁게 존재한다. 한국의 패션위크,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K-드라마 협찬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다가 떠오르는 한국 브랜드를 골

라 선점한 뒤, 본사가 진출을 결정할 즈음 매도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누적 등록된 상표가 2022년 말 기준 4,064만 건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사용 의사 없는 사재기·전매 출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 상표법 제4차 개정으로 '사용 목적 없는 악의 출원 거절' 조항이 신설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악의 선점에 점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사후 회수에는 여전히 사전 출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이 든다.

2. 마드리드만으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

다국가 동시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는 보통 마드리드 국제등록 시스템을 떠올린다. 한번의 출원으로 130개 가입국에 동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일본·EU·동남아 등 부수 시장을 뚫기에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중국만큼은 마드리드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①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중국어 상표가 마드리드 경로에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드리드 출원은 본국 기초출원과 완전히 동일한 표장이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사용할 일도 없는 중국어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해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어색하고, 식별력 심사를 통과하기도 어렵다. 결국 영문·한글 워드마크는 마드리드로 보호되더라도, 정작 중국 소비자가 실제로 부르고 검색하는 중국어 이름은 마드리드의 보호 밖에 남는다.

② 유사군표(类似群表) 매칭 공백이다. 중국은 니스 분류 45개 류 위에 독자적인 유사군 코드를 운영한다. 의류가 속하는 제 25류만 해도 2501(의류), 2503(방수의류), 2507(특수 유니폼), 2510(신발), 2511(모자) 등 12개 유사군으로 세분된다. 마드리드 출원은 영문으로 접수되어 CNIPA가 자체 번역·매핑하는 과정에서 권리가 유사군 일부에만 미치는 공백이 발생한다. CNIPA 직접출원이라면 처음부터 유사군을 명시 지정할 수 있다.

③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 호흡이 짧고 비효율적이다. 마드리드 경로로 거절 통지가 도달하면 짧은 기한 안에 현지 대리인을 새로 선임해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직접출원이라면 출원 단계부터 함께한 대리인이 그대로 대응한다.

④ 부분 거절·부분 보호가 발생할 경우 등록부가 복잡해져 텐마오·징둥 입점이나 세관 단속 신고(海关备案) 단계에서 보호 범위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일이 잦다. 또한 마드리드 등록은 상표 자체(색상·글꼴·디자인) 변경이 불가능하고, 양수인이 마드리드 가입국 소재 법인이어야 양도가 가능한 등 사후 운영의 자유도도 떨어진다.

요컨대 다른 나라는 마드리드로 묶더라도, 중국만큼은 CNIPA 직접출원이 사실상의 표준이다. 그리고 이 직접출원은 '브랜드 네이밍을 확정하는 그 순간' 한국 출원과 동시에, 늦어도 한국 출원 후 6개월 이내(파리조약 우선권 기한)에 마쳐야 한다.

3. 음역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 그리고 시장 모니터링

여기에 더해 중국 상표 등록에는 한 가지 결정적 변수가 더 있다. 중국어 음역(音譯)이다. 한국 브랜드명을 영문·한글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책일 뿐이다. 중국 소비자는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한자 이름을 만들어 부르고, 그 이름이 시장에서 굳어진 뒤 누군가 등록해 버리는 순간 정작 본사가 자기 중국명을 쓸 수 없게 된다.

뉴발란스(New Balance)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국 진출 당시 의역 '新平衡(신평형)'만 등록하고, 가장 흔히 쓰이는 음역 '新百伦(신바이룬)'은 등록하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인 개인이 '百伦'과 '新百伦'을 제 25 류에 선점했고, 뉴발란스가 자사 매장 간판·광고에 '新百伦'을 사용하자 침해소송이 제기되어 2015년 1심에서 9,800만 위안(약 175억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2심에서 500만 위안으로 감액되었지만 침해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무인양품(MUJI)의 사례는 더 뼈아프다. 1999년 진출 검토 단계에서 제 24 류(섬유·침구)에 '无印良品' 한자 표기 등록을 놓치는 사이 베이징의 한 무역회사가 같은 류에 등록했고, 무인양품은 2017년 베이징 고

급인민법원에서 무효심판 최종 패소한 뒤 지금까지도 중국 제 24 류 침구 시장에서 자기 브랜드를 쓰지 못한다.

따라서 K-패션 브랜드에 권하는 표준은 '연합상표(聯合商標) 패키지'다. 한 브랜드에 대해 영문 워드마크, 한글 워드마크, 메인 음역명(한국어 발음에 가까운 한자 조합), 대체 음역명 2~3개(시장이 다르게 부를 가능성에 대한 선점), 그리고 브랜드 콘셉트에 부합하는 의역명까지 묶어 함께 등록한다. 한글 워드마크는 한류 마케팅 현장에서 자체로 시각적 아이덴티티 역할을 하므로 결코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 시장이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샤오홍슈·도우인·웨이보·바이두 검색 트렌드, 라이브 커머스 호스트가 어떤 한자 표기를 쓰는지, 팬덤이 어떤 별칭을 만들어 내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호칭이 임계점을 넘기 전에 추가 출원으로 잡아두는 것이 — 사후에 무효심판·3년 불사용 취소(撤三)·매수 협상으로 회수하느라 사건당 수억 원을 쓰는 것보다 —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보험이다.

맺음말

정리하자면 세 가지다. ① 중국은 한국과 같은 선출원주의이고, 그 순도가 더 높아 사재기 출원이 구조적으로 많다. ② 다른 나라와 달리 마드리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공백이 명백하므로 중국은 직접출원으로 가야 한다. ③ 영문·한글에 더해 중국어 음역·의역까지 폭넓게 등록하고, 그 이후에도 중국 시장이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부르는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묶는 출발점은 단 하나, 브랜드 네이밍이 확정되는 바로 그날이다.

02. “내 빛도 아닌데 20 년째 귀국 못 합니다”... 중국에 발 묶인 한국인들

* 본고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로(손덕중 변호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88>

중국 상해에 주재 중인 한국인 A 씨는 부친 별세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다. 푸둥공항 출국심사대에서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당신은 출국할 수 없다.”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린 그는, 며칠이 지난 뒤에야 사정을 파악했다. 5 년 전 이미 퇴임한 중국 자회사의 법정대표인 명의가 등기상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회사의 채무 분쟁이 본인에 대한 출국제한으로 이어진 것이다. 심지어 A 씨는 본인이 채무자도 아닌데 말이다.

재중 한국 기업인과 교민이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신체자유 제한은 형사 정식구속이 아니라, 이렇게 통보 없이 발동되는 민사상 출국금지다. 형사 출국금지는 적법한 형사사법절차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민사 채무 분쟁에서 비롯되는 출국금지는 사실상 ‘상업 분쟁의 인질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1. 민사 출국금지의 구조적 함정

민사 출국금지의 발동 근거는 광범위하고 산재되어 있다. 출경입경관리법 제 28 조는 미해결 민사사건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결정으로 출국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2023 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 266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심리와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국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와 세수징수관리법에도 별도의 출국제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발동 단계도 광범위하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전 또는 소송 중에도, 채권자가 법원이 명한 보증금을 공탁하고 신청하면 법원은 외국인 당사자나 외국계

기업의 법정대표인·주요 임원에 대한 출국제한을 명할 수 있다. 즉 분쟁 초기 단계에서 채권자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신청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본인의 인지 시점이다. 법원 집행단계의 제한출경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권 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의 기관 조치나 다른 절차 단계에 대한 별도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공항 출국심사대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출국제한 사실을 알게 된다. 통상 1 회 발동 시 3 개월 단위로 효력이 부과되나 사실상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구조다.

앞서 본 A 씨의 사례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다. 외국계 기업이 중국 내에서 민사 분쟁에 연루되면, 그 기업의 법정대표인·실제지배인·주요 임원으로 등재된 한국인 주재원에 대해 출국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분쟁 발생 수년 전에 회사를 퇴직했다라도 등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변제 외에는 출구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 단계의 출국금지는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안이 형식상 가능하나,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도산제도의 한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첫째, 중국 기업파산법(2006 년 제정)은 적용 주체를 '기업법인'으로 한정해 왔으며, 자연인(개인)에 대한 파산제도는 없다. 2025 년 기업파산법 개정안이 기업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 주주에게도 파산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일부 확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 관련 책임을 전제로 한 예외적 인정에 불과하다. 순수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중국의 기업 파산·청산 절차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결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한계기업이 정상적으로 청산·소멸되지 못한 채 등기상 '유령 존속'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회사법 개정으로 과거 외상 3 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자체가 어려워졌다. 법정대표인이 변경되지 못한 채 그대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채무에 관한 출국금지가 법정대표인에게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셋째, 중국에서는 판결로 확정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킨다. 한국 민법은 판결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를 10 년으로 규정하지만(민법 제 165 조), 중국은 판결 확정 후 2 년 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더 이상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에 종료 시점이 없으니, 그에 연동된 출국금지도 자연 종료될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년에서 십수 년,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에 이르는 장기 출국금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당사자는 정식 절차를 통한 해결을 포기하고 밀항 등 비정상적 경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3. 영사조력법의 적용 공백

이 지점에서 영사조력법 제 11 조의 한계가 드러난다. 동 조항은 '체포·구금·수감' 시의 영사조력을 규정하나, 출국금지는 형식상 신체구속이 아닌 '출국 자유의 제한'이므로 동 조항의 직접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결국 영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변호사 명단 안내 수준에 머무르며, 영사가 중국 정부 측에 출국제한의 해제·완화를 정식으로 요청할 권한도 한·중 영사협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안이 가장 첨예해지는 단계에서 영사 활동의 법적 명분 자체가 취약하여 자국민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 통합적 대응 의제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적 조력과 제도적 정비가 동일한 의제 안에서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출국제한 부과 사전 인지 보장이다. 현행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출국심사대에서야 비로소 인지한다는 점이다. 행정적 차원에서는 영사기관이 중국 인민법원의 집행정보 공개 사이트(中国行信息公网) 등을 정기 점검하여 한국 국민에 대한 출국제한 부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의 정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한·중 영사협정에 한국 국민에 대한 출국제한 부과 시 일정 기간 내 한국 영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명문화하는 협상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영사 개입의 법적 명분 확보다. 영사조력법 제 11 조의 '체포·구금·수감'을 '신체자유 또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로 확대하거나, 출국제한을 영사조력 대상으로 명시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영사가 처분청에 본인의 입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권한, 장기간 출국제한이 지속되는 경우 외교부 차원의 별도 보고·관리 의무도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출국제한·법정대표인 등기 정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대상으로는 재외국민 법률지원 인프라의 확충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교부의 사안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출국금지 사안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은 본인이 등기상 법정대표인일 뿐 실질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회사가 사실상 청산되었음에도 등기 말소 불능으로 1년 이상 해제가 봉쇄된 경우다. 외교부는 현행 법령하에서도 영사조력법상 일반 조력 의무에 근거하여 중국 측에 처분의 근거·해제 조건 조회와 비례성 관점의 해제·완화를 정식 요청할 수 있으며, 중국이 ICCPR 서명국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 기반이 된다. 이러한 유형화된 사안은 영사 차원을 넘어 외교부 본부, 나아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의 의제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안의 외교 의제화 자체가 비례성 심사를 견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동시에 영사조력 사례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한·중 영사국장급 회의의 정례 개최, 유형별 통계 축적이 입법·외교 개선의 실증 자료로 기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협정 개정 시 비채무자에 대한 출국제한 발동 요건 강화 조항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다.

5. 결어

재중 한국인의 출국금지 사안은 개별 기업의 우발적 분쟁이 아니라, 중국 내 한국 경제활동의 구조적 위험에 해당한다. A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예전 직장이 망했다는 이유로 타의로 중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가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 최신 법령/판례 ■

01. 국무원「대외투자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에 따르면 대외투자 활동 시 투자자는 핵준·비안·정보보고·외환등록 등 법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관부서의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수출금지 또는 허가 없이는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물품·기술·서비스·데이터를 수출·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기술인력 파견·해외근무 조직·기술지도·인원 연수 등의 방식으로 이를 제 3 국에 우회 이전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실무 포인트**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투자나 기술랙스의 이전이 있는 한국 기업은, 수출통제대상 물품·기술·데이터의 제 3 국 우회이전 금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 파견·해외근무 조직·기술지도 등 인적 경로를 통한 이전도 규제 대상이므로, 현지 자회사·주재원 파견 구조와 기술 공유 흐름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 7. 1. 시행)

02. 국가지식산권국「특허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사건처리 지침(공개 의견수렴안) 초안」 (专利纠纷行政裁决和调解办案指南 (公开征求意见稿))

의견수렴안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과 특허분쟁 행정조정 두 파트로 구성되며, 특허법 및 시행세칙의 조문 번호·기관명 정비 외에도 ① 신제도 이행, ② 실제 기준 정비, ③ 절차 간소화 세 축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범위·절차·제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특허법 시행에 맞춰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관련 행정재결 부분에서 특허권 보호범위 해당 여부의 심리절차·심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 지침을 제공한 점이 주목됩니다.

▶ **실무 포인트** 중국에서 특허침해 분쟁을 겪는 한국 기업은, 소송뿐 아니라 행정재결·행정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 구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바이오 분야는 조기해결 메커니즘 관련 심리기준이 구체화되므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참고할 만합니다. (의견수렴안 단계)

03. 상하이증권거래소「발행상장심사규칙 적용지침 제 10 호 — 인공지능 대형모델 기업의 커창반 제 5 호 상장기준 적용」(发行上市审核规则适用指引第 10 号——人工智能大模型企业适用科创板第五套上市标准)

적용지침은 커창반 제 5 호 상장기준에 따라 인공지능 대형모델 기업의 ① 명확한 기술 우위, ② 단계적 성과, ③ 국가 주관부서 승인, ④ 시장 규모 등 네 가지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핵심은 단계적 성과 요건으로, 상장신청 시점에 최소 하나의 대형모델 제품이 출시 완료되고 규모화 적용을 실현하고 있어야 하며, 발행인의 주요 사업은 대형모델 자체 연구개발·모델 서비스·모델 응용 등으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범용 대형모델과 산업 특화 모델 모두 본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실무 포인트** 중국 상장(커창반)을 고려하는 AI 대형모델 기업은, 단계적 성과 요건(제품 출시 완료 및 규모화 적용 실적)을 상장신청 이전에 미리 축적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사업이 대형모델 연구개발·서비스·응용으로 한정되므로, 사업 구조 및 지분구조 설계 단계에서 부터 상장 요건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범무법인[유] 지평
상해 사무소